

대외교류위원회 규정

제정 2019년 07월 20일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외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조(사업) 및,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의 사업 중 산학연교류, 국제교류 등 각종 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는 대외교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4 조 (구성)

1. 위원회는 대외교류담당 부회장, 대외교류이사 및 약간의 대외교류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외교류담당부회장은 대외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의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제2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실시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업무 수행에 있어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